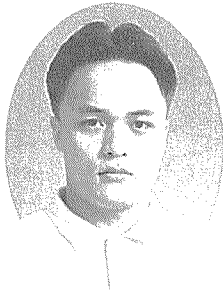


중국 국제석유합작의 필요성과 가능성



김재영

〈북경 석유대학교 공업관리학과 석사과정〉

1. 국제석유합작의 정의

국제석유합작은 1970년대 이후 정부, 국영석유회사, 국제석유 경제조직과 국경의 한계를 초월한 자연인과 법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석유·천연가스 생산영역에서 생산요소의 이동과 새로운 그 조합조정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되는 장기적인 석유경제 협조활동을 가리킨다.

2. 중국 국제석유합작의 필요성

지금까지 중국석유 수급에 관한 많은 연구 보고가 있다. 그 결과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중장기 석유 수급 불안정에 대해서는 공통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연 10%의 이상의 빠른 경제발전 속도에 따른 급속한 석유수요 확대에 충분한 국내 공급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지배적이다.

중국 중장기 석유공급부족의 예측결과

(단위: 억톤)

예측기관	2000년			2010년		
	생산	수요	공급부족	생산	수요	공급부족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 (중국)지질광산부 석유지질연구소	1.56-1.74	-	-	-	-	-
중국석유화학총공사 (중국)국가계획위원회에너지연구소	1.56	1.66	0.1	1.6	2.37	0.77
중국석유화학총공사 (중국)국가계획위원회에너지연구소	1.55-1.70	1.95	0.25-0.40	1.45-1.80	2.8-3.0	1.35-2.2
중국화학국제정보회사 (중국)청화대학핵물리연구소	1.7	2.2	0.5	2.0	-	-
중국화학국제정보회사 (중국)청화대학핵물리연구소	1.73-1.78	2.07	0.27-0.32	-	-	-
세계은행	-	2	-	-	-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	1.862	-	-	-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	2.0155	-	-	-	-

1.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은 국내산 원유수출을 줄여야 한다.
2. 적극적인 대외 석유합작을 통한 탐사·개발 활동을 확대하며 석유생산량을 늘린다.
3. 중국 국내 석유제품 수요의 빠른 증가에 따른 정유 능력을 확충한다.

이상과 같은 예측 결과로 중국의 석유수급 문제의 발전 추세는 이와 같이 진행되며 중국의 대외석유합작의 필요성을 만들었다.

또한 중국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의 문제점은 중국의 대외석유합작을 더욱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1) 중국 동부유전의 안정 공급과 증산(增産) 필요성

중국의 육상(陸上) 석유자원은 중국의 서부지역, 화북 지역 그리고 동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총생산량의 69%, 육상석유자원 총 매장량중 90.5%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과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유전의 확인매장량은 중국 총 매장량의 85%를 차지하며 중국의 주요 석유 생산지역이다.

최근 10년동안 중국은 기존의 동부 대유전인 Daqing(大慶), Shengli(勝利), Liuhua(遼河) 유전과 화북지역 유전을 중점개발하여 중국 국내 석유공급을 충당해왔으나 탐사작업의 상대적인 미비함으로 인한 가채매장량의 감소

로 석유수급에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동부유전은 이미 그 생산량이 최고점을 지난 생산의 중후반기에 다다라 함수량이(含水量)이 증가하는 등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탐사와 개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 중국 서북지역 석유자원 개발의 어려움

중국측 연구발표에 따르면 중국 서북지역의 석유자원은 중국 총 매장량의 두배가 넘는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지역으로 열악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등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존의 중국유전에 비해 탐사와 개발에 난이도가 더욱 높으며 막대한 자본의 투자와 높은 기술을 요구한다.

3) 중국 해양석유자원 개발의 필요성

중국은 육상석유자원 고갈의 빠른 진행과 탐사의 어려움으로 해양석유자원 개발이 필요한 시기에 직면했다.

중국 북부의 발해만에서 중국 남해해역까지의 넓은 해역에서 이미 유(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침적암 분포의 범위가 넓은 등 석유매장의 양호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육상석유자원의 탐사·개발에 비해 Risk가 더 크며 많은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대외석유합작을 통하여 현대화된 외국의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여 낙후된 경영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또한 탐사·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외자(外資)를 이용해 보충하고 기술상의 문제는 외국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3. 중국 국제석유합작의 가능성

1) 중국정부 정책상의 지지

1996년 3월 17일 중국은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中共中央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九五”계획과 2010년 원경(遠景)목표와 강요(綱要)》(이하《綱要》로 약칭함)를 비준하였다.

이는 국민경제 각 분야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민을 조직(組織)하고 동원(動員)해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 추진을 위한 행동 강령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綱要》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 대해서 “자원탐사를 강화하고 석유비축을 늘리며 석유·천연가스의 점진적인 증산(增產)을 유지하며 또한 부분적으로 외국자원을 이용한다”라고 가리키고 있다. 육상석유분야에 대해서는 “동부를 안정시키고 서부를 발전시키며 석유와 가스를 병행한다”는 방침과 해양석유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며 자원을 확대하고 석유와 가스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라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綱要》에서는 5년 동안 확인 매장량을 석유는 38억톤, 천연가스는 8000억 m^3 를 늘리며 현재 원유와 천연가스의 송유시설을 개선시키며 석유비축을 늘리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綱要》의 이러한 규정은 중국정부가 대외 석유합작에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책상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2) 중국정부의 대외 석유합작에 대한 법률적 보장

석유공업 발전과 국제경제합작, 기술교류의 촉진을 위해 중국국무원은 1982년 1월 30일과 1993년 10월 7일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육상 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조례》를 선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조례》는 총칙, 석유계약 각축의 권리와 의무, 석유작업과 부칙으로 총 4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해양석유자원의 대외합작개발 중 법률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 주관 부분과 권한, 업무책임, 각축의 권리와 의무 등 주의를 끝만한 조항이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육상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조례》는 총칙, 외국 계약자 권리와 의무, 석유 작업, 쟁의의 해결, 법률책임과 부칙으로 총 6장 31조로 구성되어 중국 육상석유자원 합작개발의 법률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주관 부분과 권한, 석유계약의 심사와 허가, 외국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석유사업

에 관련된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조례》와 상이하지만 각각 中國海洋石油總公司 (CNOOC :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는 해양석유자원 개발을 그리고 中國石油天然氣總公司 (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는 육상 석유자원 개발로 업무책임 분야가 각각 다르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각각 육상석유자원과 해양석유자원의 유일한 대외합작 개발의 대외창구이며 국가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이 조례외에 중국은 《외상(外商)투자 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등의 법규를 선포했다. 이 법규에서는 중·외(中·外) 석유자원 합작 개발에서 세수(稅收)방면의 증치세(增值稅)와 자원세(資源稅)방면의 우혜(優惠)정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 대외 석유합작에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

3) 국제석유합작의 경험

1979년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석유부¹⁾는 중국석유 천연기총공사의 명의로 외국 16개 석유회사와 중국남해와 중국남황해 42만km², 8개 지역에 물리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양석유자원의 대외합작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에는 일본과 프랑스 석유회사와의 담판을 거쳐 발해남부, 서부, 중부 그리고 북부만에서 4개의 석유계약을 체결했고 1982년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조례》를 선포하고 중국해양석유자원의 대외합작개발 업무에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10년 넘게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고수해 중국의 발해, 황해, 동해와 남해는 대외개방의 행렬에 진입을 했다. 1982년, 1984년, 1988년, 1992년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4차례의 국제입찰을 통해 1996년까지 16개국 62개의 회사와 109개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화 50.2억원의 외자(外資)를 이용했다. 현재 중국은 19개의

해양 유(가스)전이 생산단계에 있으며 그 중 13개의 유(가스)전이 외국기업과의 합작개발을 통한 것이다.

중국은 1995년 남방의 11개성(省)을 대외개방하여 육상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을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중국 석유천연기총공사에게 육상석유자원의 대외합작 개발의 경영업무 권한을 수여했다. 1992년 5월 중국은 육상 동부와 극근해 지역의 개방을 선포하는 등 1992년까지 외국기업과 남해복산(南海福山), 호남동정(湖南洞庭)분지, 대항조동(大港趙東) 광구 등 모두 6개의 석유계약을 체결했다.

1993년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 개발의 조례》를 선포하고 대외합작 범위도 남방 11개성에서 북방 10개성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외에 기존의 Daqing(大慶), Shengli(勝利), Lihua(遼河) 등 10개의 유전에 원유 채취율(採取率)의 향상을 위해 대외 합작을 했다. 1993년 2월 17일 육상 유전에 첫 국제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 광구는 신장(新疆), 타림(塔林) 동남(東南) 구역등의 7개 광구로 그 총면적은 72,000km²였다. 또 미국 Exxon사와 타림분지 동남부 제3광구의 석유계약을 체결하였다. 1994년 2월 8일과 3월 22일 이탈리아 Apollo사, 영국 BP사와 각각 제1광구와 제4광구에 지구물리탐사 협의를 체결했다. 1994년 1월 17일 흑룡강성(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 허북성(河北省), 허남성(河南省), 산둥성(山東省), 청해성(青海省), 호북성(湖北省), 내몽고(內蒙古), 천진(天津) 등 북방의 10개 성과 11개 지역에서 제 2차 국제 입찰을 체결했으며 그 입찰 광구 총면적은 21만km²였다.

1995년 6월 제 3차 국제 입찰을 진행했고, 서북지역의 12개 광구에 대해 입찰을 했으며 입찰 총면적은 11.2만km²였다. 제 3차 입찰을 통해 중국 육상석유 대외합작은 현재 14개 석유계약과 1개의 물리탐사를 체결했으며 면적은 모두 13.2만km²로 모두 29개의 외국회사가 참여했다.

중국은 국제 관례에 부합되면서도 중국의 주권 보호에

1) 1988년 能源部로 개정

해가 되지 않도록 중국 관련부문에 대해서도 《표준계약(標準契約)》을 제정하였다. 외국회사가 단독으로 탐사 Risk를 책임지고 쌍방이 공동으로 유전개발을 경영하며 그 투자회수에 한도액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에서 보듯이 중국은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석유자원 대외합작에 상당히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게 담판과 계약권한을 주었으며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와 선(先)담판, 국무원 주관부문의 후(後)비준의 작업형식을 만들어 작업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4. 한·중 석유합작 현황

한국기업의 대중 유전개발은 1993년 이후 SK와 한국석유공사가 중심이 되어 중국해양석유자원 개발에 참여해왔다.

1. 1993년 석유공사와 SK가 남중국해 26/23 광구에 탐사계약 체결
2. 1993년 석유공사와 SK가 남중국해 33/31 광구에 작업자로서 탐사계약 체결
3. 1995년 석유공사와 SK가 각각 12.5% 지분을 가지고 중국남해 27/35광구의 탐사계약을 체결했으나 유전개발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1997년 4월 삼성물산이 영하회족 자치구(寧下回族自治區) 남천물자공사(藍天物資公司)와 영하(寧下)지역에서 단독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한국회사로서는 기존의 중국의 해양석유자원 개발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다.

한국기업의 대중 유전탐사 개발투자가 여의치 않았던 이유는 한·중 양국의 역사적 이유에 기인한다. 양국의 오랜 시간 동안의 단절은 상호간의 이해부족을 낳았으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어왔다. 또한 그동안은 양국간의 직접적인 무역과 투자에 법적 보호도 불가능했다. 1992년 8월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체결된 무역협정과 투자 협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석

유 탐사개발은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막대한 자본의 투자와 오랜시간을 필요로 하는 투기성이 큰 사업인 관계로 한국의 대중 석유분야 투자는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인 1993년에서야 시작되었다.

5. 한·중 석유합작의 전망

석유 탐사·개발의 합작은 필히 합작주체 쌍방의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전제로 하며 또한 이 바탕 위에서 석유 경제합작을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중 양국은 석유 탐사개발 합작영역에서 상호보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81년 해외유전개발에 첫 성공을 이룬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면서 협상능력과 자금능력을 확대시켜 왔으며 1990년대에는 이전과 달리 해외유전개발시 단순지분 참여방식에서 진일보해 산유국과 직접적인 담판과 국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제 석유개발의 중심지인 영국의 북해 *Captin* 유전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해외유전 개발을 통해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석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유전개발사업 진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비교적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탐사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정책상 해외 기술과 자본의 참여를 지지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중 양국 석유합작의 전망을 밝게 한다.

한·중 양국은 석유합작 부문에서 이러한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계속해서 석유합작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중 양국은 석유 합작을 중국 영토 범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는 시베리아와 같은 제 3국에서 양국의 우위점들을 잘 조합·조정시켜서 공동으로 석유 탐사 개발을 추진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